



#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 뉴스

# 부가가치세(VAT)환급에 대한 기업들의 알고필요한 사항

2015년 11월 20일

이번 소식통으로,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는 VAT 환급 규정을 요약하고 리스크와 권고를 제기해서 각 기업 (FDI 및 외국 공사계약자)들이 환급 방법으로 납세신고할때 다음 같이 참고로 한다:

### 1. 보편적 VAT 환납을 받은 일부 경우와 대상자 :

최소 12개월연속 혹은 연속 4분기중 아직 다 공제되지 못한 매출VAT가 있는 기업들을 포함한다. 그외에 비환납 ODA 이나 지원금을 사용하는 제안, Project 들도 이애기할수 있다.

외국인 과 베트남 교포들인 경우에 출국할때 가져간 베트남에서 구매된 물건들도 VAT환급을 받을수 있다.

### 2. 기업들이 VAT환급을 받기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한가?

이런 과정은 다음 기본 스텝들을 포함한다:

2.1. 기업은 VAT 와 조세관리의 현행규정에 의한 VAT환급을 제기하는 조건만족을 스스로 검사한다.

2.2. 기업은 각 영수증, 증빙, 계약서, 보조서류들을 스스로 검사해서 세환부를 검사하는과정의 지방 세무서와 제출, 설명할수가 있다. 요런 스텝중 기업은 VAT금액을 스스로 조정해서 세무서에 VAT환납제기서를 작성하기전에 VAT환부금을 확정한다.

2.3. 기업은 지방 세무기관에 VAT 환납제기서류를 제출한다.

2.4. 세무기관은 서류의 충분을 검사후 결과통보의 약속표를 발급한다.

- 합격서류를 받은 2일후 세무기관의 전문부서가 세환납서류의 분석진행과 검사계획 등... 세운다.

- 서류의 불합격이 있는 경우엔 세무기관이 구체적 이유를 기업에 통보해준다.

2.5. 세무기관은 검사 발령 및 검사 업무 진행(검사 전 세환급 후의 경우)을 기업 본사에 한다. 혹은 기업에 세환급을 해준다 (환급 전 검사 후의 경우).

- VAT의 환급을 한번도 받지 못한 기업에 대선 검사를 한 후 VAT 환급 결정을 발급한다.

- **특별 주의점으로, 세무기관은 조세 검사 발령을 했으면 기업이 그전에 신고된 조세의무의 정보들을 조정할 수 없다.**

2.6. 세무기관은 기업 본사에 검사할 때 기업이 원본 서류 제출과 영업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서 환납 제기된 환부금을 증명해준다.

- 이런 검사 스텝에 VAT 검사 업무의 집중 외에 검사팀은 기업의 문제점, 기타 조세의무에 대한 불합법 신고 있다고 생각할 때 조세 전문 부서 나 경찰소와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한다.

- (예: 이전 가격, 외국인원의 개인소득 세, 외국으로 대출금에 대한 외국 공사 계약 자의 세금 등...) 혹은 탈세 문제 의혹이 있는 경우.

2.7. 기업 본사에 조세 검사 과정을 마무리한 후 기업과 세무기관들이 Data의 통일 및 조세 검사 확인서를 서명해서 그중에 회계, VAT 준수 문제, 금액 감소 조정 (있으면) 그리고 기업의 제기 의한 환급 가능한 VAT 금액 혹은 제기된 VAT 환부금보다 발현된 VAT가 커서 추가 VAT 납세를 기업한테 제기한다.

2.8. 기업은 세환부금을 받게 된다.

2.9. 제출 서류의 개별 경우와 시점에 따라 기업은 세환급 서류에 대한 더 고급 조세 기관 혹은 국가 감사 기관(지방 세무서의 협조로) 후검(재검사) 요구를 제기하게 된다.

### 3. VAT 환급 제기를 할 때 기업은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가?

3.1. 세환급의 지연 시에 이자를 받은 권:

세환납 사류의 해결이 세무기관의 잘못으로 지연되면 규정에 따른 환부 세금액 외 기업은 환납 지연 시간에 대한 환부금의 이자도 받게 된다.

- **계산 이자는 국가 은행 발표의 기본 이자으로 세무기관이 세환급 결정을 낸 시점에 효력 있다.**

3.2. 불평 제기 (Complaints) 권한 :

기업은 세무기관의 행정 결정에 대한 고소권이 있다. 그중에 세환급 결정,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페널티 결정, 조세 사찰 결정 등 포함한다.

- **고객님들이은 Grant Thornton Viet Nam(주) 의 2015/08/19일 소식통 중 Complaints의 절차를 참고할 수가 있다.**

3.3. 보관 및 세무기관에 공급해준 서류 관리 의무 :

기업은 세환급에 대한 관련된 각종 원본 서류, 증빙들을 충분 보관하고 세무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서류를 공급해준다.



#### 4. 기업은 VAT 환급 제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리스크들을 알아야한것들:

4.1. 조세관리 법규문서에 반영된 세무 행정절차를 정확히 세금계산 신고를 집행한 필요가 있다.

4.2. 기업은 외국어로 표현되니가 영수증, 계약서, 서류 원본 혹은 법적근거부족서류들을 세무기관 의 요구 대로 제출못한다.

4.3. 세무기관이 설명요구를 할때 기업의 각부서들은 세무기관에 일관성 없는 정보를 공급하거나 문서 없고 증명서류 없는 공급을 한다.

#### • 보통적으로세무서의 확인수속들이 다음 포함

- 상품에 대한 확인: 물건구입 계약서; 물건 인수인계; 인수인계장소; 물건 운송 방법; 운송비용; 물건 소유주 와 물건의 출처 (물건인수인계 시점전에).
- 결재에 대한 확인 검사: 거래은행; 거래 위한 계정에 입금 대상; 거래 횟수; 결재 방식; 결재 증빙.
- 채권상감 확인서 검사.
- 세무기관은 정보교환규정에 따른 세관 기관의 공급해준 정보들을 검토해야하고 세관 과 세무기관들의 협력을 해서 물건 신고서 대비를하면서 정보교환상 신고서 와 맞은것을 보장한다. 규정처럼 정보들의 부족이면 VAT환급을 할수없다.

4.4.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검사과정에 찾아낸 추가 발생의 세금의무를 스스로 조정하거나 그 문제 들을 세무서의 업무전담부서 혹은 경찰소에 전해라는 요구를 할수있거나 그문제들을 세무 서의 전 담부서 혹은 경찰소에 보내준다. 예, 외국인 임원의 개인소득세의 불정확 혹은 부족 계산 신고, 외국 partner에게 결재금의 공사계약 자의 세무 혹은 이전가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 어서 이전가 격 가능의 의혹등...

• **최근에 검사과정중엔 검사팀이 세총국에 제기 해서 이전가격의 표현이 있음으로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을 전면적 사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4.5. 세무기관은 행정위발의 페널티 각 항목을 지정 할수 있고 규정 맞지않는 환급제기의 세금액에 10%-20% 로 보충 벌금도 대리고 지연납금 이자 항목에대 한 0,05%/하루 (거의 18%/년)을 부과 한다.

• **기업은 그런 벌금항목들이 법인세 계산시 합리적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다.**

#### 5.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VAT 환급을 필요한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할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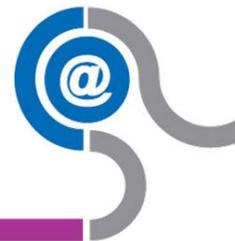
5.1. VAT 환급을 할수있는 조건선택을 확정 해준 협조를 기업에 해주고 지방세국에 제출하기 전에 VAT환급제기 서류초본의 내용을 검토해준다.

5.2. 기업을 협조해서 증빙, 영수증, 계약서 와 보충 서류들을 검토협조해서 잠재의 리스 크를 발견된 보장과 법규 범위내 적합한 진행의 세무 리스크의 컨트롤의 각조치를 협조한다.

5.3. 기업을 협조해서 기업에 세무검사 진행 과정중 세금의무에 대한 설명을 세무서와 같이 한다.

5.4. 기업을 협조해서 VAT, 매출전표-영수증의 리스크검사규정 과 영업규정을 마련하고 진행시켜 세무리스크의 쉬운 검사와 다음 번의 VAT환급을 위한 각규정들을 간소화 한다.

**고객님은 더 협조를 받으시려면 우리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전문가와 같이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This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 responsibility can be accepted by Grant Thornton Vietnam for errors or omissions in this publication or for loss occasioned to any person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ng as a result of any material in this tax alert.

If you have any question or required further information relating to this tax alert, please contact our professional tax advisors.

### For download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gt.com.vn](http://www.gt.com.vn)



#### Hanoi Office

18<sup>th</sup>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 Hoang Kho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mailto:Khoi.Hoang@vn.gt.com)

####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mailto:Du.Nguyen@vn.gt.com)

#### Pham Ngoc Long

Tax Director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mailto:Long.Pham@vn.gt.com)

####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mailto:Kaoru.Okata@vn.gt.com)

#### Nguyen Nhat Le

Tax Senior Manager  
D +84 4 3850 1685  
E [Le.Nguyen@vn.gt.com](mailto:Le.Nguyen@vn.gt.com)

#### Ho Chi Minh Office

14<sup>th</sup>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8 3910 9100  
F + 84 8 3910 9101

####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mailto:HungDu.Nguyen@vn.gt.com)

####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mailto:Valerie.Teo@vn.gt.com)

#### Tran Hong My

Tax Director  
D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mailto:HMy.Tran@vn.gt.com)

####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mailto:MongVan.Tran@vn.gt.com)

#### Tomohiro Noriok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mailto:Tomohiro.Norioka@vn.gt.com)

#### Nguyen Bao Thai

Tax Senior Manager  
D +84 8 3910 9236  
E [Thai.Nguyen@vn.gt.com](mailto:Thai.Nguyen@vn.gt.com)